

충청북도체육시설의설치,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4년 8월 30일

나. 회부일자 : 1994년 8월 30일

3. 제안이유

- 체육시설의 설치,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과 그동안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등을 보완,개선하고자 함.

4. 주요골자

- 체육시설의 설치,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사항
 - 체육도장과 인접한 장소범위를 정한 규정의 삭제
 - 과태료의 상향에 따른 부과기준 보완(제3조)

-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 개선사항
 - 과태료 부과대상자 관련규정 신설(제2조)
 - 이의신청과 관련한 조항 신설(제4조)
 - 과태료 부과징수와 관련한 준용기준 신설(제5조)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체육시설의 설치, 이용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바,

이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('94. 6. 17)시행과 관련하여

현행조례의 미비점과 후속조치사항을 첨기하여 보완개선하려는 내용으로서

그 주요내용 으로는

· 현행조례 제2조 부과대상의 과태료부과대상자 관련규정의 전문개정으로 과태료부과대상자를 명시하였으며 제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적용법 조문의 교정 및 과태료의 상향에 따른 부과기준 보완으로 단서 규정명시와 제4조 내지 제5조의 이의신청 및 과태료부과징수와 관련한 준용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써

본 개정조례안은 승인하여 줌이 타당한것으로 사료됨.

6. 첨 부

- 충청북도 체육시설의 설치, 이용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(안)